

한국보건복지인재원 신규직원(일반직 6급) 채용 공고

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보건·복지 분야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. 보건·복지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1. 26.
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

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및 「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」에 기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1. 모집분야 및 인원

| 채용 직급 | 분야 | 담당 업무 | 인원 | 근무 지역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계 | | 9명 | | |
| 일반직 6급 (주임) | 일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경영·행정·교육관리 ■ 사회복지분야 교육, 보건의료분야 교육 등 | 8명 | 전국* | - |
| | 정보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정보화 사업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화 기획, 정보시스템 인프라운영 등 | 1명 | | 정보화 분야 전공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|

* 순환보직제를 적용하고 있으며, 임용 후 인력 운용상황에 따라 채용분야와 다른 업무로 조정될 수 있음

* 배치예정 근무지 : 본원(오송) 및 7개 지역(서울, 부산, 대구, 수원, 광주, 대전, 제주)

2. 근무조건

- (고용형태)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. 임용 후 수습기간(3개월)을 적용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여부를 확정함.
- (근무지역) 본원(오송) 및 7개 지역(서울, 부산, 대구, 수원, 광주, 대전, 제주)
- * 순환보직제 운영
- (근무시간) 주 5일(월~금 9:00~18:00) 근무
- (보수수준) 우리원 「보수규정」에 따름

3.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

○ 응시자격요건

| 채용분야 | 지원자격 |
|----------------|---|
| 공통 (일반/정보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■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* 및 제57조(정년퇴직 등)에 해당되지 아니하며,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및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(최종시험 예정일 기준)■ 응시연령 및 성별, 학력 제한 없음 * 단, 연령은 기관 정년 기준(60세) 적용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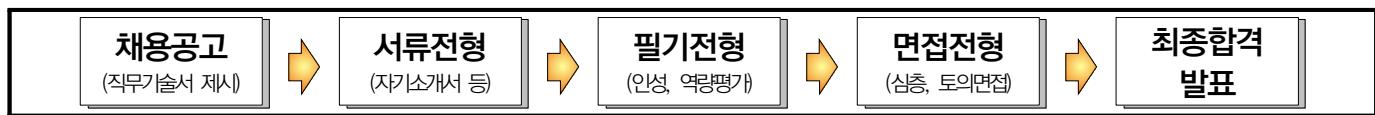
○ 우대사항

| 채용분야 | 우대사항 |
|----------------|---|
| 정보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정보화 분야 전공자 및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|
| 공통 (일반/정보화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, 자립준비청년, 이전지역 지역인재, 우리원 우수인턴 선발자,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자, 우리원 경력자, 경력단절여성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족 ※ 채용우대사항 관련 【붙임】자료 참고 |

*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
9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10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4. 채용 전형 절차 및 방법



| 전형 절차 | 예정일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| '26.1.26.(월) ~ 2.9.(월) 18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리원 채용홈페이지(kohi.recruiter.co.kr)에서 개별접수 ※ 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,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|
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'26.2.13.(금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사기준: ① 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 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 교육 및 자격사항 ④ 경력 및 경험 사항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, 가점을 반영하여 서류 전형 최종 점수를 결정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0배수 이내 최하위순위 합격자가 동점일 시 동점자 전원 합격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|
|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| '26.2.13.(금) ~ 2.20.(금) 18: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점 대상자 증빙서류 채용홈페이지 등록 및 제출 *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형 포기로 간주하며 필기전형(역량평가) 응시 불가 |
| 필기전형 1차 (인성검사) | '26.2.21.(토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심사기준: 성장가능성 및 조직적합성 불합격 기준: ① 종합결과 40점 미만자/② 응답신뢰 불가자 필기전형 1차(인성검사) 합격자 발표: '26.2.23.(월) 예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채용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|
| 필기전형 2차 (역량평가) | '26.2.28.(토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험유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업기초능력평가(NCS): 5개 과목(의사소통, 문제해결, 수리능력, 자원관리, 정보능력)에 대한 4지선다 시험 *1과목당 10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(논술): 보건, 복지, 교육 등 기관 사업과 관련한 논술 시험 합격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 유형별 40점 이상이며, 두 유형의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 가점을 합산한 후 고득점 순에 따라 분야별 모집인원의 5배수 합격자를 선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5배수 이내 최하위 순위 합격자가 동점일 시, 동점자 전원 합격 |
| 필기전형 2차 합격자 발표 | '26.3.4.(수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|
| 면접시험 (심층/토의 면접) | '26.3.10.(화) ~ 3.12.(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심사기준: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, 우대 가점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결정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세부일정 개인별 안내 예정 장소: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오송 본원 예정 |

| 전형 절차 | 예정일 | 내용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최종합격자 발표 | '26.3.19.(목) | ·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· 최종합격 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가능 |
| 임용서류 제출 | '26.3.19.(목) ~ 3.27.(금) | · 채용신체검사(6개월 이내 건강검진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가능) 및 증빙서류 제출 ※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|
| 신규임용 | '26.3.30.(월) | ·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개별 통지 |

※ 전형 일정, 합격자 발표일 등은 기관 내부사정 및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합격자 발표 안내

한국보건복지인재원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(kohi.recruiter.co.kr)을 통해 개별 확인

- 전형별 심사대상자 전원에게 합격자 발표 확인 문자 통보
-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로 통보되며, 이메일 및 휴대폰 번호 오류 · 누락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 있음

5. 제출서류

○ 제출서류 유의사항

- 모든 제출 서류는 제출기간 이외에 별도 보완 및 추가 제출 기간이 없으며, 반드시 사전 준비 요망
- 모든 제출 서류는 **임용예정일(2026.3.30.) 기준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**하도록 **유효기간**이 남아 있어야 하고, 가급적 온라인 발급본으로 제출 * 온라인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 시 원본으로 별도 제출

| 제출시기 | 세부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|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입사 지원 시 | <p>1.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역량기술서(직무계획서 포함) 등</p> <p>※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는 채용사이트-입사지원(kohi.recruiter.co.kr)에서 작성하여 제출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| <p>■ 가점 증빙서류 (입사지원서 내 우대사항 가점을 표시한 자에 한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류제출기간 : '26.2.13.(금) 합격자 발표 이후 ~ 2.20.(금) 18:00 까지 - 가점 증빙서류는 기재한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,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-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역량평가 응시 포기로 간주하며 역량평가 응시 불가 -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하며,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* 진위확인 조건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-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되 응시자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,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※ 해당자만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요건</th> <th>증빙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취업지원대상자</td> <td>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(관할 보훈부 등)</td> </tr> <tr> <td>2. 장애인</td> <td>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</td> </tr> <tr> <td>3. 저소득층</td> <td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</td> </tr> <tr> <td>4. 자립준비청년</td> <td>보호종료확인서,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5. 이전지역 지역인재</td> <td>학력증명서 ※ 지역인재 확인을 위해 최종학력 출입(예정)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 포함하여 제출</td> </tr> <tr> <td>6-1. 우리원 우수인턴</td> <td>우수인턴 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6-2. 공공기관 청년인턴</td> <td>청년인턴 수료증, 경력증명서</td> </tr> <tr> <td>7. 우리원 경력자</td> <td>경력증명서 ※ 우리원 청년인턴 제외, 사업계약직만 해당</td> </tr> <tr> <td>8. 경력단절여성</td> <td>가족관계증명서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</td> </tr> <tr> <td>9. 북한이탈주민</td> <td>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10. 다문화가족</td> <td>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요건 | 증빙서류 | 1. 취업지원대상자 |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(관할 보훈부 등) | 2. 장애인 |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| 3. 저소득층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| 4. 자립준비청년 | 보호종료확인서,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| 5. 이전지역 지역인재 | 학력증명서 ※ 지역인재 확인을 위해 최종학력 출입(예정)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 포함하여 제출 | 6-1. 우리원 우수인턴 | 우수인턴 확인서 | 6-2. 공공기관 청년인턴 | 청년인턴 수료증, 경력증명서 | 7. 우리원 경력자 | 경력증명서 ※ 우리원 청년인턴 제외, 사업계약직만 해당 | 8. 경력단절여성 | 가족관계증명서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| 9. 북한이탈주민 |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| 10. 다문화가족 |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| |
| 요건 | 증빙서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. 취업지원대상자 |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(관할 보훈부 등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. 장애인 |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. 저소득층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. 자립준비청년 | 보호종료확인서,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. 이전지역 지역인재 | 학력증명서 ※ 지역인재 확인을 위해 최종학력 출입(예정)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 포함하여 제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-1. 우리원 우수인턴 | 우수인턴 확인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-2. 공공기관 청년인턴 | 청년인턴 수료증, 경력증명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. 우리원 경력자 | 경력증명서 ※ 우리원 청년인턴 제외, 사업계약직만 해당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8. 경력단절여성 | 가족관계증명서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9. 북한이탈주민 |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0. 다문화가족 |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제출시기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(원본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/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) 1부(원본) 기본증명서(상세/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) 1부(원본) 대학(전문대학) 이상 졸업(예정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(원본) ※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제외하며 대학 중퇴·편입학, 전문대학 취득의 경우, 해당 증명서 모두 제출(단,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·성적증명서 제출하며 해외 교육기관일 경우 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원본) 채용신체검사서 1부(원본) ※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건강검진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가능 가점 증빙서류 1부(원본)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온라인 제출한 모든 서류 원본 일체 경력(또는 재직)증명서 1부(원본) : 입사지원서 기재한 모든 경력사항에 대해 제출 ※ 발급 6개월 이내의 증빙서류, 경력사항에 기재한 경력일체, 기간별 세부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자격(면허)증 사본 1부(사본) : 입사지원서 기재한 모든 자격(면허)증에 대해 제출 신원진술서 1부(원본) ※ 10~12번 양식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해당자에게만 개별 배포 예정 공공기관 직원 비위면직자 확인사항 및 친인척 현황조사 수집동의서 1부(원본) 임용에 필요한 기본 인사정보 등록서류 및 임용구비서류 각 1부(원본) |

6. 기타사항

-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블라인드채용에 의거하여 채용을 진행하며,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에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**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결격처리(합격취소·임용취소) 할 수 있습니다.**
-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 통보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**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**
- 채용분야별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에서 합격자 바로 하위 최고 득점자 순으로 **채용공고 인원의 최대 2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.**
* 예비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대상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, 예비합격 시 근무기간은 당초 임용종료일 까지 근무 가능
-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**연락처(휴대폰, 이메일 등)**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**변경될 경우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.**
-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은 일체 받지 않으며, **인사 청탁 시에는 본원의 「직원 채용 운용세칙」에 따라 불합격 처리됩니다.**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**14일 이내** 추가 제출서류(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파일 제외) **반환 청구**를 하여야 하며, 반환요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**14일 이내** 응시자에게 채용서류를 **반환합니다.**

☞ 주소) (2815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사혁신부
☞ 문의) 채용홈페이지 “1:1문의”활용 / 인사혁신부 ☎ 043-710-9147 / fax 043-710-9142

[붙임]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채용 우대사항 안내

※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항목을 적용(최상위 1개)

| 요건 | 가점기준 | 전형단계 적용 | | | 증빙서류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서류 | 필기 | 면접 | |
| 1. 취업지원 대상자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| 5% 또는 10% 가점 | 5% 또는 10% 가점 | 5% 또는 10% 가점 |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(관할 보훈부 등) |
| 2. 장애인 |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| 5% 가점 | 5% 가점 | |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|
| 3. 저소득층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| 5% 가점 | 5% 가점 | 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 |
| 4. 자립준비 청년 |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자 중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'청년' | 5% 가점 | 5% 가점 | | 보호종료확인서,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|
| 5. 이전지역 지역인재 |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자 (최종학력 기준) * 단석/박사 졸업인 경우 학사만 해당 | 3% 가점 | | | 학력증명서 |
| 6. 청년인턴 | 우리원 우수 인턴 선발자 | 5% 가점 | 5% 가점 | | 우수인턴 확인서 |
| | 공공기관 청년인턴 근무자 * 단일경력 4개월 이상자에 한하여 인정 | 2% 가점 | | | 청년인턴 수료증, 경력증명서 |
| 7. 우리원 경력자 | 최근 3년 이내 우리원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(우리원 청년인턴 제외) *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%, 12개월 이상 5% | 3% 또는 5% 가점 | | | 경력증명서 |
| 8. 경력단절 여성 |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(공고일 현재 무직인자에 한함) | 3% 가점 | 3% 가점 | | 가족관계증명서,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|
| 9. 북한이탈 주민 |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| 3% 가점 | 3% 가점 | |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|
| 10. 다문화 가족 |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| 3% 가점 | 3% 가점 | |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|

※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자에 한하여 인정

※ 인성검사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

※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, 전형별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해서만 적용함

※ 청년인턴 가점은 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간만 유효하게 적용함

※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적용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를 따름

가.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

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"이전 지역 학교"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)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.

나. 이전지역 학교

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

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
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
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
*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 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
③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

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
ⓐ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
ⓑ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
ⓓ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
ⓔ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다. 이전 지역인재

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

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(예정)자

ⓐ 이전지역에 위치한 「고등교육법」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

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
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ⓐ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
ⓑ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
ⓒ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
ⓓ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
ⓔ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⑤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⑥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< 예 시 >

〈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〉

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
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 - 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
〈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〉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
〈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〉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해당
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〈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〉

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〈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〉

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 : 비해당
 - ※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
〈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〉

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 : 비해당

〈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〉

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

참고2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30조의2(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)

-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- 3.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인 경우: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